

대법원 2020도12861 명예훼손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 9. 1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400여명이 모인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담 등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는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음(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 4.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약 4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피해자는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 왔고(이하 '공산주의자 발언'), 청와대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안검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 온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치 못한 인

사를 하였다(이하 '인사불이익 발언')는 취지로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나. 소송경과

- ▣ 제1심(서울중앙지법) : 무죄
- ▣ 원심(서울중앙지법) : 일부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부 이유 무죄
 - 유죄: '공산주의자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 무죄: '인사불이익 발언' 부분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 ▣ 쌍방 상고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이 사건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파기 환송

-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 파기함

다. 판단 내용

-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관련 법리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

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키고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임(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254, 37531 판결 참조),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함**.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함.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참조).

● **피고인의 ‘공산주의자 발언’ 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피해자가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산주의자 발언에 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었다고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음
-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공산주의자’ 라는 말이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

하여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발언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

- 인사불이익 발언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음

- 특히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음

- 관련 사건 :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8279 판결(민유숙 대법관 주심)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9812 판결(이동원 대법관 주심)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조재연 대법관 주심) ☞ 공산주의자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파기 환송함